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 사고 통지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공통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2. 피해자 사고경위서(학교 내 관련 담당자 서명 날인) 3.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치료비 (학생)	공통서류 이외 서류 없음
대인손해 (제3자)	1. 사고발생 장소 사진 2. 사고영상(CCTV, 블랙박스 등),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3.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4.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사고원인제공자 확인서(중앙회 양식) 5. 교외 사고일 경우 관련 계획 문서
대물손해 (제3자)	1. 사고발생 장소 사진 2. 사고영상(CCTV, 블랙박스 등) 3.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4.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사고원인제공자 확인서(중앙회 양식) 5. 파손물건 사진 6. 교외 사고일 경우 관련 계획 문서
사망	1. 사고발생 장소 사진 2. 사고영상(CCTV, 블랙박스 등),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3.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4. 교외 사고일 경우 관련 계획 문서

※ 통지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공통서류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통장계좌사본 ※ 타인 계좌로 공제급여 수령 시 [붙임 3] 공제급여 청구 등에 관한 위임장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 제출 필요
치료비 (학생)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로는 처리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4.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지만, 100만원 미만 건도 사안에 따라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대인손해 (제3자)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초진기록지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5. 수술 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대물손해 (제3자)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증빙불가 한 경우 제품명, 사양 등이 확인되는 서류로 대체가능
손해방지 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후유장해	1.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사고원인 입증 및 공제급여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학교배상책임공제]

○ 사고 통지

차량파손	1. 사고영상(CCTV, 블랙박스),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2. 파손사진, 사고장소 사진(사고당시, 사고이후 모두 가능) 3. 사고원인제공자 확인서(중앙회 양식) ※ 사고원인제공자가 작성하기 불가능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사고통지자 대체가능 4. (교외 활동의 경우)학교 수업 운영 계획서 ※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확인 5. 차량파손 부위 중 유리파손이 있을 경우 ※ 1) 차량 유리파손으로 인한 썬팅 재시공시 기존 썬팅 시공 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보증서 또는 시공 비용 영수증, 내역서 등) 2) 기존 썬팅 유무와 필름 제조사, 등급을 확인하여 동일 필름, 동일 가격 및 기존 시공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 6.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 공무원 책임보험 접수 후, 발급된 접수번호를 사고통지 내 기입 7.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제3자 배상책임 (대인/대물)	1. 사고영상(CCTV, 블랙박스),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2. 파손사진(대물), 사고장소 사진(사고당시, 사고이후 모두 가능) 3. 사고원인제공자 확인서(중앙회 양식) ※ 사고원인제공자가 작성하기 불가능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사고통지자 대체가능 4. (교외 활동의 경우)학교 수업 운영 계획서 ※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확인 5. 차량파손(대물) 부위 중 유리파손이 있을 경우 ※ 1) 차량 유리파손으로 인한 썬팅 재시공시 기존 썬팅 시공 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보증서, 시공 비용 영수증, 시공내역서, 썬팅마크 중 하나) 2) 기존 썬팅 유무와 필름 제조사, 등급을 확인하여 동일 필름, 동일 가격 및 기존 시공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 6. 교직원이 가해자(원인제공자)인 경우,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 공무원 책임보험 접수 후, 발급된 접수번호를 사고통지 내 기입 7.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휴대폰 분실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난신고) 또는 분실신고증(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제출) 2. 보관함 사진 및 시건장치 사진 3. 문답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4. 휴대폰 수거·관리에 관한 학교규칙 또는 관련 내부결재 서류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휴대폰 파손	1. 파손사진 2. 문답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3. 휴대폰 수거·관리에 관한 학교규칙 또는 관련 내부결재 서류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급식과태료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혹은 부과 공문서 혹은 고지서 등 사본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은 사고통지 시 다운로드 가능) ※ 1) 법인통장의 경우 - 교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개인통장의 경우 - 예금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교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교장이 개인에게 공제급여 청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제출)

※ 사고원인 입증 및 공제급여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 공제급여 청구

제3자 대인	- 상병명이 표기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본인부담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병원 발급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에는 치료항목별 금액이 표기되어야 함 - 약제비 영수증 - MRI 및 CT촬영 등 영상검사 자료 사본(선택사항, 필요 시 담당자가 요청) ※ 촬영 CD 사본을 사무실 주소로 우편 발송 하여야 함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대물(차량)	- 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 1) 차량 유리파손으로 인한 썬팅 재시공시 기존 썬팅 시공 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보증서 또는 시공 비용 영수증, 내역서 등) 2) 기존 썬팅 유무와 필름 제조사, 등급을 확인하여 동일 필름, 동일 가격 및 기존 시공범위 내에서만 보상 가능 - 수리비 등 지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 영수증, 수기 영수증 제출 불가 ★ 차량 렌트비 청구 시 렌트비 내역서(렌트 차종 및 가격 표기) 제출 ☞ 렌트비는 차량 수리를 위한 입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국산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지급 - 차량 수리 과정 및 수리완료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피해자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대물(일반)	- 피해물품 구입 시기 및 가격 증빙 서류(구매 영수증 또는 구매내역서 등) - 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간이 영수증, 수기 영수증 제출 불가 - 수리·보수가 완료된 사진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휴대폰 분실	- 학생 휴대폰 수거 관련 학교규칙 등 관련 규정 - 휴대전화 가입 확인서(출고가 및 가입일, 핸드폰 기종이 명시되어야 함) ※ 휴대폰 가입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생과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휴대폰 수거 가방, 휴대폰 보관 시설 시건장치 관련 사진 - 전월 통신료 명세서(부가 서비스 요금 내역 포함)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 경찰서 분실 신고 내역
휴대폰 파손	- 학생 휴대폰 수거 관련 학교규칙 등 관련 규정 - 휴대폰 수리비 지출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 휴대폰 수거 가방, 휴대폰 보관 시설 시건장치 관련 사진 - 휴대폰 파손 및 수리완료 사진 - 전월 통신료 명세서(부가 서비스 요금 내역 포함)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급식 과태료	- 과태료 납부 영수증 -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공제급여 지급 계좌 통장사본

※ 사고원인 입증 및 공제급여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첨부서류	1.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로는 처리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5.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

※ 사고원인 입증 및 공제급여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청소년활동안전공제]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치료비 (학생)	1.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로는 처리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통장계좌 사본 5. 초진기록지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대인손해 (제3자)	1.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전표로는 처리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4. 통장계좌 사본 5. 초진기록지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대물손해 (제3자)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5. 통장계좌 사본 6. 기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문서

※ 사고원인 입증 및 공제급여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